

의료원연구비 의과학연구지원과제 지원 지침

1. 시행목적

의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원연구비를 조성함으로써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수연구부문 대학평가지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과제구분

연구부문	연구기간	연구비(천원)	최대 선정 과제수	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일반연구 부문	1년	8,000 - 10,000	15	SCI-E, SCI, SSCI 등재학술지 해당 연구분야의 논문(주저자-책임 기준) 1편.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 3년 이내
전략연구 부문 ^{주)}		10,000 -15,000	10	또는 SCOPUS 등재 논문(주저자-책임 기준) 2편. 단, 케이스 리포트와 letter는 인정하지 않음 ※ 해외 특허등록은 SCOPUS 등재 논문(주저자-책임 기준) 1편으로 간주.	

주)

- 연구과제는 일반연구 및 전략연구 부문으로 구분하되 단일 연구자에서 부문 간 중복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전략연구는 아래의 방법론이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칭하고 이외는 일반연구 부문으로 분류한다.
 - 인공지능연구 - 연구의 주제나 방법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경우
 - 빅데이터연구 - 건강보험 빅데이터 혹은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데이터 무상제공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는 일반 연구과제로 제출)
 - 다기관연구 - 전공 연구 분야가 같은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관의 연구자가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데이터 제공에 대한 내용은 논문에 기술되어 있어야 함)
 - 융합연구 - 연구의 대상과 방법이 연구 분야가 다른 2개 이상의 연구일 경우 (단순 공저자 참가는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학문 분야의 일반적 영역을 벗어난 연구주제인 경우)
- 연구계획서의 완성도를 평가하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당 부분이 비경쟁일 경우 가급적 전체 신청자를 지원하되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 한 부문 이상이 경쟁일 경우 전략연구 부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3. 시행년도, 시행일 및 연구기간

가. 시행년도 : 2024학년도

나. 시행일 및 연구기간

시행일	연구기간
2024. 9. 1.	2024. 9. 1~ 2025. 8. 31.

4.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 의과대학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신청자격 제외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연구 부문 신청자격 제외자

- 정년퇴임까지의 재직 잔여 년 수가 시행일 현재 4년 미만인 교원
- 2024년 교비 연구과제 수혜자(교비 연구과제라 함은 교비공모 연구과제, 신임교수 연구과제, 교비 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과제를 말한다.)
- 교비(연구년제 및 의료원 연구비 지원과제 포함) 연구과제를 지원받고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

다. 전략연구 부문 신청자격 제외자

- 1) 정년퇴임까지의 재직 잔여 년 수가 시행일 현재 4년 미만인 교원
- 2) 기타 자격 제한 없음

5. 교수 1인당 총 신청 가능 과제 수

1인당 일반연구 부문 또는 전략연구 부문 1개 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6. 연구지원금 : 2억원 이내(의료원)

7. 연구실적물

가. 일반(전략)연구 부문 : 아래에 해당하는 논문(실적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SCI-E, SCI, SSCI 등재학술지 해당 연구분야의 논문(주저자-책임 기준) 1편. 또는 SCOPUS 등재 논문(주저자-책임 기준) 2편. 단, 케이스 리포트와 letter는 인정하지 않음.

※ 해외 특허등록은 SCOPUS 등재 논문(주저자-책임 기준) 1편으로 간주.

나. <삭제>

8. 연구실적물의 연구비 지원 명기

본 연구과제의 지원금으로 수행한 논문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교비지원금을 받아 수행하였음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고 교내·외 타 연구과제와의 이중사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4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

9. 신청방법

신청 대상 교원은 URP에 “의료원연구비 의과학연구지원과제” 신청서 탑재

10. 신청서류

의료원연구비 과제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11. 신청기간 : 2024. 00. 00. ~ 2024. 00. 00.

12. 선정방법

가. 선정 절차 : 신청서접수 → 의과대학 연구위원회 → 영남대학교 연구조정위원회 → 총장

나. 단독(전략)연구 부문 선정기준 : 아래의 1) + 2)의 총점 100점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2)의 과제계획서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3년 이내 URP상 필수연구업적의 지원자 중 순위 (50점)

① 각 부문당 1등은 50점. 이후는 ‘50/지원자수’의 등식에 의해 순서대로 차점을 부여한다.

$$\frac{n-r+1}{n} \times 50 \text{점} \quad (n : \text{지원자수}, r : \text{지원자 순위})$$

예) 전략연구 부문 (10명 선정)에 20명 지원 시, 최근 3개 학년간 필수연구업적 1순위자 50점, 2순위자는 $50/20=2.5$ 의 공식에 의하여 $50-2.5=47.5$ 점, 3순위자는 45점, 20순위자는 2.5점 부여한다.

② 최근 3개 학년의 필수연구업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해연도까지의 업적을 3년 평균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예) 신임교원의 경우, 본인의 필수연구업적을 3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2) 과제계획서 평가 (50점)

① 연구의 우수성: 25점

② 연구과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25점

③ 과제계획서 평가 점수(총 50점)가 3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다. <삭제>

라. 연구과제 선정시 의과대학연구위원회 위원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년도 과제 선정 심사에서 제척한다.

13. 연구결과물(보고서) 제출

가. 논문 제출 :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URP에 해당 연구실적물 등록 후 과제 연결

※ 시행일 이전에 투고한 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출기간내 미제출에 대한 제재

●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원이 “가”항에서 정한 연구결과물 제출 기간내에 연구결과보고서(논문의 게재 예정증명서 또는 게재승인편지 제출시 인정)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지급 연구비 전액을 즉시 회수하며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교비 연구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제한함

※ 신청 자격 제한 교비 연구지원 제도

- 연구년제를 포함한 교비 및 의료원 지원 연구과제
- 교비지원 박사후과정연구원 배정
- 우수학술지 게재논문 사후지원 연구비

※ 결과물 미제출 교원이 교비 연구지원제도 신청제한 기간 중에 해당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시점부터 교비 연구지원 제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 연구결과물 제출기한까지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교원이 이미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교비 연구지원 제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SCOPUS 논문 1편 제출의 경우 연구비 반납은 사용 금액의 50%).

● 연구보고서 미제출교원이 중도 및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면직될 경우 이미 지원한 연구비 전액을 회수함(SCOPUS 논문 1편 제출의 경우 연구비 반납은 사용 금액의 50%).

14. 연구지원금 편성 및 집행

항 목		내용 및 특기사항	산출기준	구성비
인건비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보조원의 연구지원 수당		60%이내
	연구조교 분담금	연구조교 인건비 분담금	분담금 범위 내	
연구장비 •재료비	재 료 비	시약, 소모성 재료 및 부품 등 구입비	실 경 비	
	기계기구 매입비	연구기기 구입비	실 경 비	
	집기비품 매입비	연구실 사용 집기비품 구입비	실 경 비	
	기자재임차료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임차·사용료	실 경 비	
	시설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사용에 관한 제반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실 경 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외여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외 여비 (항공료 및 체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산출	
	인 쇄 비	최종보고서 인쇄비, 논문 인쇄비 등	실 경 비	
	참고문헌비	참고문헌 구입비, 자료 복사비 등	실 경 비	
	공공요금 등	우편, 전화 등 공공요금, 연구보조원 상	실 경 비	

항 목		내용 및 특기사항	산출기준	구성비
	제잡비	해보험료, 기타 잡비 (단, 개인휴대폰요금 제외)		
	국내여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 여비	영남대학교 교직원 여비규정에 의거 산출	80%이내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수행을 위한 기술취득 및 정보수집 비, 학회 연회비, 논문 게재료 및 심사 료, 실태조사비 등	실 경 비	80%이내
	회 의 비	전문가 자문 회의비, 평가 회의비 등	실 경 비	80%이내

- ① 연구보조원 수당은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종료 후 일시 지급할 수 있다(연구보조원의 통장입금).
- ② 연구조교 인건비 분담금은 연구조교를 활용하는 배정교원에 해당되며 분담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 ③ 국내여비는 교직원 출장 허가원에 의하여 교직원 여비지급 기준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 3일 초과 출장은 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학회출장은 학회 공식일정표를 첨부하여야 신청한 여비를 지급한다.
- ④ 국외여비는 항공료 영수증에 의한 항공료와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한 체재비를 지급한다.
- ⑤ 연구기간 중에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지출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필요에 따라 연구결과물 제출 기한까지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연장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⑥ 인건비 항목은 총 연구지원금의 60%, 국내여비는 80%, 기술정보활동비 및 회의비 항목은 항목별로 총 연구지원금의 80%를 초과하여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5. 연구지원금 지급중지 및 회수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경우 총장은 연구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가. 연구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 나.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또는 허위사실의 기재, 기타 부정행위로 연구비의 지급을 받았을 때
- 다.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 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마. 동일 연구과제로 이미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바. 본 대학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사. 전략연구를 지원받았으나 최종결과물이 전략연구부문의 각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최종 과제 제출시 연구위원회에서 제출 결과물에 대해 기준 부합여부 심의)는 일반연구 부문의 최저 금액을 지원하며 그 차액에 대해 환수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담당	팀장	부처장	처 장
			전결

○○○○ 학년도 영남대학교
의료원연구비 의과학연구지원과제 신청서

교수전공계열	1. 기초의학 () 2. 임상의학 ()				
연구책임자	소속 교실 :		성명 :		
과제신청구분 (해당 란에 √ 표시)	일반연구	전략연구 (아래 중 중복 표기 가능)			
	()	① 인공지능연구 ()	② 빅데이터연구 ()	③ 다기관연구 ()	④ 융합연구 ()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첨 부 : 연구계획서 1부.</p> <p>위와 같이 ○○○○학년도 의료원연구비 의과학연구지원과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책임자 _____(인)</p> <p>영남대학교 총장 귀하</p>					

의료원연구비 의과학연구지원과제 계획서

연구책임자	소속 교실 :		성명 :			
과제신청구분 (해당 란에 √ 표시)	일반연구	전략연구 (아래 중 중복 표기 가능)				
	()	① 인공지능연구 ()	② 빅데이터연구 ()	③ 다기관연구 ()	④ 융합연구 ()	
연구과제명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국내외 연구활동(연구배경) [생략 가능]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참 고 문 헌 [생략 가능]

6.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기준	구성비
인건비	연구보조원 수당			60%이내
	연구조교 분담금			
연구장비· 재료비	재 료 비			
	기계기구 매입비			
	집기비품 매입비			
	기자재임차료			
	시설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외여비			
	인 쇄 비			
	참고문헌비			
	공공요금 등 제잡비			
	국내여비			80%이내
	기술정보 활동비			80%이내
	회 의 비			80%이내
계				